

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·열람일	처리기간	90일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	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		
	운영예정일			

사무소 소재지

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」 제1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 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 서류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수수료 없음
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. 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(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)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

